

서울특별시마포구세계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2.10.18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2년 10월 9일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2년 10월 16일
- 다. 상정일자 : 제172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(2012년 10월 18일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총무과장 선우근

가. 제안이유

동 조례안은 조례제정 목적인 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기능이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제1항으로 대체 입법됨에 따라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명시함으로써 그 실효성이 없어져 「서울특별시마포구세계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」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(1) 「서울특별시마포구세계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」를 폐지함.

3. 검토보고 (전문위원 명금길)

동 조례안은 조례제정 목적인 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기능이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제1항으로 대체 입법됨에 따라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

명시함으로써 그 실효성이 없어져 「서울특별시마포구세계화추진협의회구성 및운영에관한조례」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것으로서 우리 구 조례·규칙심의 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으로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